

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
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5. 3. 24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**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
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**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03호로 2025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
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
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
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정비(안 제3조)
- 나. 위원 해촉 사항 정비(안 제5조)
- 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5조의2)
- 라. 기타 조문 현행화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부서 자체개선안(성별균형참여 반영) 동의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- 4) 인권영향평가: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
⇒ 상기 검토 결과 반영하여 입법안 정비

변경 전	변경 후
제5조(위원의 임기 등)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청렴성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	제5조(위원의 임기 등)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라.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2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당연직 위원을 “부서 명”에서 “업무 기준”으로 변경하여 행정 기구 개편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·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3조(구성)는 당연직 위원(위원장 및 부위원장)을 “부서 명칭”에서 “업무 기준”으로(“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”)개정함
- 안 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의 내용 중 본 위원회 기능에 맞게 적절히 규정함
- 안 제7조(회의운영)제4항은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, 신설된 안 제5조의2의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
- 또한 조문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>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비하였음

	개정 전	개정 후
정정(訂正)	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	교통민원신고심의 의 위원회
붙여쓰기	갈음 한다 제외 한다 인정 하는 사실 조사 하여	갈음한다 제외한다 인정하는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
띄어쓰기	(조합,단체) 이하“구청장”	(조합,▼단체) 이하▼“구청장”

	월1회 모든사항	월 ^v 1회 모든 ^v 사항
용어정비	1회에 한정하여 위촉 해제	한 차례만 ¹⁾ 해촉 ²⁾

- 그 밖에 위촉직의 성별균형참여 및 인권영향평가 검토 결과³⁾를 반영함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제정(1996.02.28.)된 후,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차례⁴⁾ 개정된 바 있음. 이에 추후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·과의 명칭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도록 당연직 위원(위원장 및 부위원장)을 “부서 명칭”에서 “업무 기준”으로(“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”)개정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였음.
- 한편, 현행 조례 제7조(회의운영)제4항⁵⁾은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, 해당 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(안 제5조의 2)로 신설

1) 법제처 <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> 228p

번호	정비 대상 용어	한자·원어	순화 용어
4043	한하여 (1회에 한하여)		한 차례만, 한 번만, 한 차례에 한정하여

2) 법제처 <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> 228p

- “위촉”에 상응하여 “해촉”으로 표현

3) [평가내용] 1. “질병”을 당연해촉 사유로 삼기에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

2. “청렴성 훼손”을 당연해촉 사유로 삼기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

4) 개정시기(6차례): 1999.10.08./2006.10.04./2010.09.30./2013.07.25./2016.07.01./2019.01.01.

5) 제7조(회의운영) ④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하였으며, 제척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·의결 시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이번 임시회에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상정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“부서 명칭”으로 규정하였는데, 이는 “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”의 당연직 위원이 소관 부서의 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서의 장들까지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, 조문의 6)간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식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사료되며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“업무 중심”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할 것임.

6)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(증보판) 118p
<제1절 문장정비의 원칙> - 간결한 문장쓰기

참고 자료

1

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